

제23차 정기총회 회의록

I. 일자 : 1977년 3월 25일

II.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강당

III. 안건 : 1. 개회식

2. 제9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3. 1976년도 사업실적보고
4. 1976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5. 정관 개정에 관한 일
6. 19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임원 개선에 관한 일
8. 기타

IV. 참석회원 : 참석 255명, 위임 74명

V. 회의내용

1. 개회식

국민의례

개회사(회장 리선근)

환영사(국립중앙도서관장)

축사(대한출판문화협회장)

2. 제9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단체공적상 : 2개도서관

개인공적상 : 6명

봉 사 상 : 4명

(감 사 패) : 4명

—5분간 휴회—

성원보고 : 단체회원 492명중 참석 255명 위임 74명으로 회의 성립 정족수 246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박대권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리선근회장이 신병관계로 불참하여 이 봉순 전무이사
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개회를 선언함—

안건 3. 1976년도 사업실적보고

박대권 사무국장이 유인하여 배부된 1976년도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의장의 질의 요청이 있었으나 질의가 없고 만장일치로 원안을 접수 승인하다—

안건 4. 1976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

1) 한성택부장이 유인하여 배부된 1976년도 결산보고서를 관항목별로 상세히 보고하다.

2) 이어서 박희영감사는 1976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 보고하다.

—의장의 질의 요청이 있었으나 질의가 없고 만장일치로 원안을 접수 승인하다—

안건 5. 정관개정에 관한 일

1) 박대권 사무국장이 개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본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며 그 내용은,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바꾸어 명예회장 1인을 두고 과거 전무이사 1인을 두기로 되어있는 것을 부회장 2인을 들으로써 이하 관계 조문이 자동적으로 개정하게 될을 유인하여 배부된 신구·대조표에 따라서 조문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2) 이에 대하여 김성기(국민대학도서관장)회원은 사단법인체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예회장에 대한 지위 즉 권한과 위치의 규정이 개정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명예회장 1

인을 두는 조항을 빼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다.

이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되다.

3) 조제후(영등포중학교장)회원은 명예회장은 어디까지나 명예회장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위치를 정관상 명시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단법인체에 명예회장(고문등)



개회식 광경

을 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국의 허가과정에서의 결과에 따르도록하여 명예회장을 정관상 규정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면 이사회 결의로써 명예회장을 두도록 하는 개의안을 제출하다. 이 개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되다.

—다른 의견이 없고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회원수 242명중 개의안 찬성 133명 동의안 찬성 87명 기권 22명으로 개의안이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안이 의결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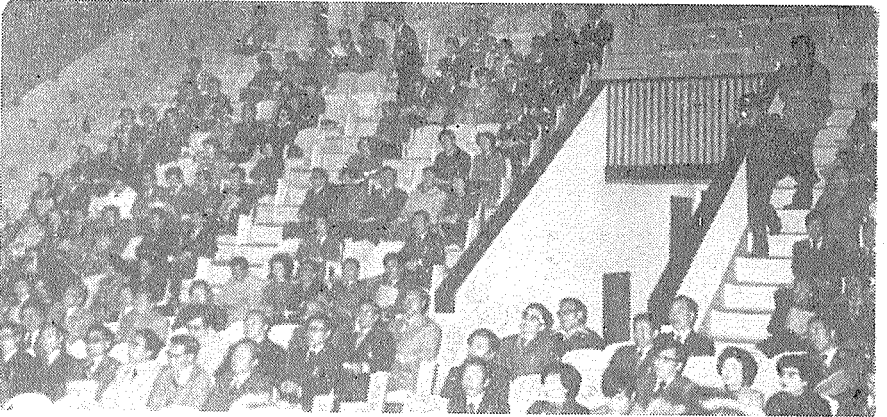
- 4)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사단법인 정관은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하여 달라고 제의하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전원 찬성하여 준칙에 맞는 내용과 수정권한을 사무국에 일임한다—

(중식관계로 1시간30분간 휴회)

안건 6. 197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1) 박대권 사무국장은 1977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유인하여 배부된 1977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 2) 이에 대하여 출판사업에 있어서 500부 발간하는 것과 300부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
- 3) 위 질문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발간계획된 출판물중 “개발계획서”는 회원도서관에 무료로 배부키 위하여 500부 발간할 계획이며 기타 보급 가능성에 맞추어 3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더 필요할 경우 필요한 수량을 더 발간할 수 있다고 답변함.
- 4) 김남석(계명대학교도서관장)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다. 이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하다.
- 5)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질문하다. —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 6) 이어서 박대권 사무국장은 1977년도 예산안에 대



총회에 참석한 회원

한 항목별 내용설명을 상세히 하다.

- 7) 이에 대하여 김성기(국민대학교도서관장)회원은 기부금과 지원금에 대하여 과연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8) 위 질문에 대하여 박대권 사무국장은 협회의 재정자립을 회비로서만 충당하기는 어렵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때 까지는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기부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지원예산액은 반드시 세입되어야 다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세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방침 이며 현재 예산규모는 최소의 것이며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다.
- 9) 조창환(대구학생도서관장)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다. 이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하다.
- 10)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질문하다. —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안건 7. 임원개선에 관한 일

- 1) 박대권 사무국장은 임원 개선에 관한 내용설명을 하고 아울러 임시의장을 선출해 줄것을 요청하다.
- 2) 김성기(국민대학교도서관장)회원은 지금까지 의장을 맡아온 이봉순 전무이사가 계속하여 의장을 맡아주도록 긴급 동의하다. —전회원은 긴급동의를 이의없이 받아 들이다—
- 3) 사무국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임원선출에 대한 정관상의 관계조문을 설명하다.
- 4)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평의원을 우선 선출할 것을 선언하고 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다.
- 5) 최도철(전라중학교교장)회원은 전행위원을 선출하여 선임토록 하되 선임된 평의원을 총회에서 승인

하도록 하자고 동의하다.

- 6)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들어와 성립되다.
- 7)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질문하다.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통과되다—
- 8) 의장은 전형위원 선출방법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 9) 김우중(구미무역)회원은 각 관중별로 1인, 학계 1인 사무국장 계 6인의 전형위원을 각부회 또는 회원이 구두호천하여 선임하자고 동의하다.
- 10)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되다.
- 11) 이에 대하여 각 시·도별 1인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계 12명으로 하자는 개의안이 제출되다.
—개의안은 재청 삼청이 없어 성립 되지 않고 동의안이 전원 찬성하여 통과되다—
- 12) 각부회 또는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두 호천하다.
공공도서관 이흥구(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장)
대학도서관 류동열(서울대학도서관사서과장)
학교도서관 이정희(경기도등학교사서교사)
특수도서관 정덕영(홍능기계공업사도서관장)
도서관계 김남석(계명대학도서관학과)
—이에 대하여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전형위원으로 선임되다—
—의장은 전형위원이 평의원을 선출할때까지 휴회

를 선언하다—

- 13) 의장은 속회를 선언하고 전형위원이 선출한 평의원 명단을 전형위원중 1인이 발표할 것을 요청하다.
- 14) 류동열 전형위원은 선출기준과 방법등을 상세히 설명 보고하고 평의원 40명을 발표하다.
—이에 대하여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 15) 조재후(영동포중학교장)회원은, 기타 사항은 평의원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하다.
—다른 의견은 없고 이의없이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안건8. 기타

- 1) 권양원(연기군교육장)회원은 회비가 전체 사업에 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26.6%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하기위하여서는 현행 회비를 인상하도록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다.
—이 동의안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성립하다—
- 2) 의장은 다른 의견없는지 질문하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동의안을 전원 찬성하여 통과시키다.
—의장은 다른 의견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1977年度 事業計劃

今年度 事業規模는 目的事業 14種과 理事會運營등 4種을 합하여 모두 18種事業에 豫算은 3千2百萬원이 다. 昨年에 比하여 2種事業이 追加되었고 1千萬원의 豫算이 增額된 셈이다. 새로 追加된 事業은 再教育세미너와 出版事業으로써 再教育세미너는 一線 司書들에 대한 再教育을 實施하는 것으로써 時宜適切하고 必要한 事業이며 出版事業은 그간 財政關係로 發刊치 못하고 있던 圖書館專門書를 다시 發刊하기 始作한 것으로써 매우 뜻있는 事業의 追加라고 할 수 있겠다. 그 外 事業들은 모두 繼續事業으로써 每年 實施하지 않으면 안되는 基本事業들이다.

以上과 같은 各種 事業들은 最少限의 事業規模로써 100% 完了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이들 事業을 推進하기 위한 歲入豫算이 確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協會의 事業計劃은 歲入實績에 따라서 執行하여야만 하는 特殊한 實情이며 따라서 크나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是

이다. 이러한 特殊한 事業으로 因하여 協會의 事業計劃은 不振할수 밖에 없고 필요불가결한 事業은 歲入實績이 부진하더라도 施行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未拂金이 자연적으로 累積되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惡循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財政難은 매우 심각한 狀態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이로 因하여 우리들이 23年間 알뜰이 가꾸어 지켜온 協會의 存立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責任을 져야할 重大問題가 아닐수 없다. 그래서 今年度 定期總會에서는 協會再建을 위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衆意를 모았던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方向에서 計劃된 新年度 事業을 원활히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全體 圖書館人들의 聲援과 協助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것이다.

다음에 77年度 事業計劃을 概略의으로 紹介한다.

1. 圖書館開發計劃事業

우리 나라의 圖書館發展에 대한 具體的인 方向을 設定한 圖書館開發計劃書를 確定하여 發刊하고 圖書館法 改正作業 및 司書職權益伸張 위한 事業을 推進한다.

2. 讀書週間行事

9月 24일부터 30일까지 1週日間 第23回讀書週間을 全國的인 行事로 實施한다. 中央에서는 포스터 및 標語를 制作하여 配布하고 座談會 등을 開催하며 各圖書館에서는 自體行事計劃을 樹立하여 各種行事를 實施한다.

3. 全國圖書館大會

圖書館界의 當面한 問題와 進路를 研究 協議하고자 하는 重要目的으로 開催하는 本大會를 今年度에는 第15回大會로서 9月頃에 開催한다.

本大會에서는 特別講演 및 主題別 研究發表가 進行된다.

4. 圖書館週間行事

4月 12일부터 18일까지 1週日間 各級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全國的으로 實施된다.

이 行事는 圖書館의 重要性을 널리 認識시키고 圖書館事業을 強力한 社會運動으로 發展시키고자 하는 目的이 있다.

5. 「도립월보」發行

圖書館運營의 有關한 理論 및 實務에 有關한 研究論文과 圖書館界動向을 紹介하는 圖書館專門誌로서 出版分科委員會의 責任下에 每月 1,800부 年 10책을 發行하여 會員과 關係機關에 配付한다.

6. 圖書館統計 調査

教育調査分科委員會의 責任下에 77年度 韓國圖書館統計를 조사, 1977年度 「한국도서관통계」를 500부 發刊

하여 會員圖書館 및 關係機關에 研究資料로서 提供한다.

7. 指導育成事業

地區協會 및 部會의 事業活動을 支援하며 各種機關에서 刊行되는 非賣刊行物을 수집하여 會員圖書館에 配付하는 事業으로서 事業費支援은 各地區協會 및 部會의 事業費補助申請에 의하여 支援하고, 圖書配付事業은 40,000卷정도 수집하여 會員도서관에 배부한다.

8. 調査研究事業

圖書館學 및 圖書館運營에 有關한 專門委員會의 事業으로서 8個 分科委員會의 各種 事業을 推進한다.

9. 再教育 세미나

各級圖書館에 근무하는 司書들에 대한 새로운 圖書館學에 有關한 再教育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今年度에 新設한 사업이다.

10. 表彰事業

第9回 韓國圖書館賞 實施과 기타 圖書館發展에 功獻한 有功者를 表彰하기 위한 사업이다.

11. 出版事業

그간 豫算관계로 發刊치 못하고 있던 圖書館運營資料와 書誌資料 5種을 發刊하여 各級도서관에 普及한다

12. 資料室運營

協會內에 圖書館學關係 資料室을 積極 運營하여 圖書館人들의 資料利用 편의를 제공한다.

13. 國際活動事業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과의 交流와 기타 各國 圖書館界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14. 其他事業

本會目的達成에 필요한 기타사업을 계획하여 施行한다.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됩니다.